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0. . . (제 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총리 (인사혁신처 소관)
제출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개방형 직위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민간 임용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에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 근거를 마련하고, 탁월한 성과를 거둔 임용자의 임용기간 연장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면제하여 각 부처의 인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등 그간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방형 직위 우수 성과자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 허용(제9조)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어 특별한 성과를 낸 우수 인재에 대해 성과에 따른 보상이 따르도록 임기 중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의 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

나. 중앙선발시험위원회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 시험위원 참여(제6조)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 운영시 해당 직위에 최적격자가 선발될 수 있도록

경력개방형 직위가 아닌 선발시험에도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시험위원 참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다. 개방형 직위 임용자 임용기간 연장시 협의 면제(제9조)

개방형 직위 임용자가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5년을 초과하여 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면제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을 확대

라. 개방형 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 명확화(제7조)

임용후보자 추천시 적격자 없음이나 1명을 추천할 경우가 발생하므로 2명 또는 3명으로 규정되어 있는 임용후보자 선발·추천 인원을 3명 이내로 변경

마. 선발시험 재공고 기간 확대 및 사유 명확화(제21조)

선발시험 재공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수 인재의 발굴 및 응시자의 서류 등 준비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재공고 기간을 7일 이상으로 확대하고, 응시자가 없을 경우도 재공고가 가능하므로 재공고 사유를 명확하게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6. 17. ~ 7. 2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에 단서 중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경우에는”을 “다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2명 또는 3명의”를 “3명 이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중 “2명 또는 3명의”를 “3명 이내의”로 한다.

제9조제2항에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임용기간”을 “총임용기간”으로 한다. 같은 조에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을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원으로”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호 중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었을 것”을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고, 임용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한 경우 : 임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고, 제2호 중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3년에 도달하였을 것”을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임용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으로 하고, 제3호는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공무원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제3항 중 “7일의 범위에서”를 “7일 이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을 “응시자가 없거나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적은”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제공무원의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 임용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임기제공무원의 임용기간 연장 협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임용을 위한 선발시험 공고를 한 개방형 직
위에 대해서는 제6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 위원회)	제6조(개방형 직위 중앙선발시험 위원회)
① (생략)	① (현행과 같음)
②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은 공무원(국·공립 대학의 교원을 제외한다)이 아닌 사람으로서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분야 또는 채용·면접 등 시험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인사혁신처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경력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한 개방형 직위 선발시험의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이하의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을 선발시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 ----- ----- ----- ----- ----- ----- ----- ----- . 다만, ----- ----- ----- ----- ----- ----- -----.
③ ~ ⑦ (생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제7조(개방형 직위의 임용절차)
① 선발시험위원회는 개방형 직위(경력개방형 직위는 제외한다)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	① ----- ----- ----- 3 명 이내의 -----

하고 추천 순위를 정하여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선발 시험위원회의 임용후보자 추천 순위에 따라 임용해야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추천 순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선발시험위원회는 경력개발형 직위의 임용예정 직위별로 2명 또는 3명의 임용후보자를 선발하고 추천 순위 없이 소속 장관에게 추천하며, 소속 장관은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추천한 임용후보자 중에서 임용해야 한다.

③ · ④ (생략)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생략)

② 소속 장관은 개방형임용된 사람의 성과가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충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illegible]

②-----
----- 3명
이내의 -----

③・④ (현행과 같음)

제9조(개방형 직위의 임용기간)

① (현행과 같음)

②

아니하고 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쳐 총 임용기간 5년을 초과하여 일정한 기간 단위로 임용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장
관은 임기제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는 제5조에 따른 선발시험과 제
7조에 따른 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일 개방형 직위에
경력경쟁채용등의 방법으로 임
기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단서
신설>

1.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되었을 것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

총

임용기간

③ 제1항 및 제2항 -----
 -- 해당 개방형 직위에 공무원
 이 아닌 사람이 임기제공무원으
 로 임용되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해당
호의 구분에 따라 -----
-----. 이 경우 공무원
임용령제16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개방형 직위 충임용기
간이 3년에 도달하고, 임용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한 경우 : 임기
제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

2. 해당 개방형 직위 총임용기

간이 3년에 도달하였을 것

3. (삭 제)

<신 설>

제21조(시험의 공고)

①·② (생 략)

③ 소속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 일의 범위에서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선발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1. 제2항이나 제4항에 따른 공고의 결과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없는 경우

2.·3. (생 략)

④ ~ ⑥ (생 략)

간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임용기간 동안 성과가 탁월하여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성과연봉 등급 중 최상위등급을 받은 경우 : 상위직급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

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용으로 인하여 소속 기관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 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21조(시험의 공고)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7
일 이상 -----

-----.

1. -----
----- 응시자가 없거나 그 기관 외부의 응시자가 적은 ---

2.·3.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개방교류과	
연 락 처	(044) 201- 8351